

의안 번호	929	【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· 제안자 : 2012. 08. 31(금) · 이효상의원 외 3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0. 12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10. 18(목)

2. 제안이유

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~4조)
- 나.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
- 다.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7조)
- 라.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(안 제8조)
- 마.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, 설명회 청구권(안제15조)

- ## 4. 관계법령 :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,
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9조,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입법 예고사항 : 2012. 09. 24 ~ 2012. 10. 04.(의견없음)

6. 검토의견

- ▶ 법률 또는 조례로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.
- ▶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,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- ▶ 감사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.공공감사에관한법률.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
- ▶ 구정평가 주민참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
- ▶ 공청회의 주민참여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▶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- ▶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정보 및 회의자료 등을 주민이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.
- ▶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대한 개별적 법률이 없다면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조례이나, 본 조례안 핵심내용은 이미 개별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, 본 조례안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.